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**1. 안 건 명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**2. 제출일자 및 제출자**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(화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**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**

2010년 4월 9일(금)

**4. 개정근거**

「지방자치법」(2009. 4. 1 시행 법률 제9577호) 제142조

## 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안은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4호에 “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”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, 종전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, 안 제16조제4호에 “특기장학생은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·고등학생으로 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는바,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시 단위가 광역 지자체의 시·도인지 기초단위 지자체의 시·군·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전문위원 수정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특기장학생은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 · 고등학생으로 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16조(장학생의 자격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<u>특기장학생은 시·도 단위 이상의 영어, 수학,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, 예술, 체육 분야의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·고등학생으로 한다.</u></p>

# 관 계 법 령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09. 4. 1] [법률 제9577호, 2009. 4. 1, 일부개정]

-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